

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조중 "환경보전법 제11조"를 "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"로 한다

제3조 제2항중 "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한다

제8조 제2항중 "환경보호과장"을 "환경관리과장"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